

대한민국정부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2021호 1992. 1. 17. (금)

부 령

- 내무부령 제554호(내무부소관행정사무감사규칙증개정령) 3
- 교통부령 제970호(항공시설관리규칙증개정령) 3

인 사

- 인사발령 6

고 시

- 환경처고시 제92-4호(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증개정) 6
- 환경처고시 제92-5호(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7
- 환경처고시 제92-6호(자동차배출가스및소음·진동검사방법 및 절차에관한규정증개정) 7
- 환경처고시 제92-7호(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증개정) 7
- 환경처고시 제92-8호(자동차배출가스, 소음·진동검사및검사용기기·교정용품검사에관한수수료증개정) 8
- 내무부고시 제92-1호(가야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8
- 재무부고시 제92-1호('92정부회계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신청) 8
- 동력자원부고시 제92-2호('92년도석유사업기금운용관리요령) 9
- 건설부고시 제92-10호(서울도시계획창전, 중계4, 상계3주택개발구역지정및변경지정결정) 13
- 건설부고시 제92-11호(신태인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14
- 체신부고시 제92-4호(우편물운송료) 14
- 체신부고시 제92-5호(우체국신설) 14
- 국립지리원고시 제8호·제9호(공공측량성과) 15
- 국립지리원고시 제10호(기본측량표이전성과) 16

(이면 계속)

회								
람								

발행총무처 (편집 720-4331 보급 754-4332)

1201-4A 1981.12.18.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 g/m²

05-13

1057

공 고

○공보처공고제92-1호('91년도남본정기간행물보상).....	16
○상공부공고제92-2호('92년도우수디자인상품선정계획).....	16
○건설부공고제92-5호(광주하남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준공)	19
○공업진흥청공고제92-78호(KS표시허가)	20
○해운항만청공고제92-2호('92년도용역사업집행계획).....	20
○조달청부산지청공고제92-2호(단가계약체결)	21
○대전지방환경청공고제92-2호(방지시설업등록및취소)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92-4호(도로사용개시및폐지)	22
○여수지방해운항만청공고제92-2호(해기사면허증무효)	22

입찰공고

○조달청내자공고제92-7호(조달물자(내자)구매입찰공고)	23
○치료감호소공고제92-1호(의약품구매입찰공고)	24
○축산시험장공고제2호(연간단가계약재입찰공고)	24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공고제92-1호(입찰공고)	24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1호(입찰참가자격등록공고)	25
○화성군공고제1호(하천끌재매각재입찰공고)	25
○제천시공고제7호(용역입찰공고)	25
○선산군공고제92-4호(공사일반공개입찰공고)	26
○순천시보건소공고제1호('92년도단가계약입찰공고).....	26
○청송군보건의료원공고제1호(의약품구매입찰공고)	27

지방행정

○부산직할시고시제92-6호(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적승인)	27
○광주직할시고시제92-4호(도시계획시설(공원)정정)	27
○경상북도고시제92-9호(점촌홍덕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개정)	27
○경상북도고시제92-10호(영천도시계획망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및지적승인)	28
○경상남도고시제7호(진해이동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8
○경상남도고시제8호(울산·미포국가공업기지내공장부지조성사업시행기간연장승인)	28
○경상남도고시제9호(경상남도국가공업단지내특수선판건조기,반시설조성사업시행기간연장승인)	28
○경상남도고시제10호(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내철구조물제작및조립식주,택지재생산공장부지조성사업시행기간연장승인)	29
○여천군고시제92-1호(어선등록필증무효)	29
○창원시고시제1호(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승인)	29
○북제주군고시제59호(김녕도시계획(김녕유원지)조성계획지적승인)	31
○경상남도공고제11호(공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32
○(인천)복구공고제4호(전문건설업면허취소)	32
○양구군공고제92-5호(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	32
○ 철원군공고제92-6호(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	32

부 령

◎내무부령 제554호

내무부소관행정사무감사규칙증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2년1월17일

내 무 부 장 관 〔内〕

내무부소관행정사무감사규칙증개정령

내무부소관행정사무감사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경찰사무에 대한 행정감사에 한하여, 이하 “감사”라 한다)”를 (이하 “감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감사단”을 “감사반”으로 하고,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감사단의 단장과 감사관”을 “감사반의 반장과 반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감사단”을 “감사반”으로 한다.

①감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관에 그 때마다 감사반을 두되, 감사반은 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내무부장관이 행하는 종합감사의 반장은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서기관이 되고, 감사반원은 부내직원과 관계부처 직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5조 제1항중 “감사관 및 치안본부장”을 “감사관”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경찰서장”을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감사단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반원의 직급·성명

4. 주요현황

5. 감사총평

11. 현지 조치사항

12. 수법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조치결과의 보고등) ①피감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피감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그 징계의결요구사항을 감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자치법의 개정(1991.5.23. 법률 제4,367호) 및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의 제정(1991.5.31. 법률 제4,371호)에 따라 내무부의 감사대상기관에 서울특별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감사에 따른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결과를 피감사기관의 장이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내무부 제공>

◎교통부령 제970호

항공시설관리규칙증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2년1월17일

교 통 부 장 관 〔内〕

항공시설관리규칙증개정령

항공시설관리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 의) 이 규칙에서 “항공시설”이라 함은 교통부 및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공항의 여객청사·화물청사·활주로·계류장·주차장·항공통신시설 및 항공보안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제4조, 제5조”를 “제5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p>제5조 중 “비행장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를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로 한다.</p>	<p>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중 “비행장장을 거쳐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를 각각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로 한다.</p>
<p>제6조 및 제7조 중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비행장장”을 각각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p>	<p>제16조 중 “지방항공관리국장”을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비행장장 또는 공단이사장”을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p>
<p>제8조 제1항 본문 중 “비행장(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국제공항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관할 비행장장을 거쳐 지방항공관리국장에게,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국제공항에 있어서는 공단이사장에게”를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로 한다.</p>	<p>제17조 제1항 본문 중 “비행장장을 거쳐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를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공단이사장”을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p>
<p>제9조 제1항 본문 중 “비행장(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국제공항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관할 비행장장을 거쳐 지방항공관리국장에게,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국제공항에 있어서는 공단이사장에게”를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로 하고, 동항단서 중 “지방항공관리국장(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국제공항에 있어서는 공단이사장)”을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공단이사장”을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p>	<p>제17조의2 제1항 중 “비행장내”를 “공항안”으로 한다.</p>
<p>제11조 단서 중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공단이사장”을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p>	<p>제18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비행장내”를 “공항안”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3호·제5호 중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비행장장”을 각각 “지방항공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3호 중 “비행장”을 “공항”으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비행장내”를 “공항안”으로 한다.</p>
<p>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중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를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항공등화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로 하며, 동조 제4항 제5호의 2·제6호 및 동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6항 중 “비행장장 또는 공단이사장”을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p>	<p>제19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중 “비행장”을 각각 “공항”으로 하고, 동조 제3호·제6호 및 제10호 중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비행장장”을 각각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항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보안시설 사용료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불을 피우는 것</p>
<p>제13조 제1항 중 “비행장”을 “공항”으로, “비행장장”을 거쳐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를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로 한다.</p>	<p>제20조 중 “비행장내”를 “공항안”으로, “비행장”을 “공항”으로, “비행장장, 비행장직원, 경찰관”을 “공항에 근무하는 공무원·경찰관”으로 한다.</p>
	<p>제23조 본문 중 “비행장장 또는 공단이사장”을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삭제한다.</p>
	<p>제24조 중 “비행장장 또는 공단이사장”을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p>
	<p>제25조 및 제26조 중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비행장 관리상”을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공항 관리상”으로 한다.</p>
	<p>제27조 중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공단이사장”을 “당해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p>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타목중 "지방항공관리국장 또는 공단
이사장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당해 공
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개정(1991.11.11. 대통령령 제13,504호)으로 지방항공관리국의 명
칭이 지방항공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공항입장권교부제도의 폐지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공항입장표의 교부제도는 각 공항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함(제4조·
제12조제4항제6호 및 제12조제5항).
- 나. 지방항공관리국의 명칭을 지방항공청으로 변경하고, 비행장장을 삭제함(제5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내지 제9조·제23조 내지 제27조).

<교통부 제공>

인사 발령

◎ 1992년 1월 17일자

교통부 항공국 공항개발과

토목기좌 안병돈(安秉敦)

시설기정에 임함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시설국장에 보함

◎ 1992년 1월 16일자

교통부 항공국 공항개발과

건축기좌 정희문(鄭喜文)

시설기정에 임함

교통부 근무를 명함

◎ 1992년 1월 15일자

교통부 항공국 공항개발과

건축기좌 이영근(李靈根)

시설기정에 임함

교통부 근무를 명함

(대통령)

고 시

◎ 환경처고시제9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환경처고시제91-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1월 17일

환경처장관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시험, 소음시험 또는 경시변화시험은 관계공무원의 입회시험으로 하되, 자동차공해연구소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자의 자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변경을 하는 경우에 3원촉매장치의 변경에 의한 내구성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에 의한 내구성시험(이하 "실차시험"이라 한다)에 갈음할 수 있다.

1. 당초 인증시 내구성시험에 사용한 3원촉매장치와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3원촉매장치를 같은 조건에서 대기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상당하는 경시변화시험을 하여 이때 산정된 열화계수의 차이가 당초의 3원촉매장치를 기준으로 각 항목마다 10%이하인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새로운 3원촉매장치의 열화계수가 당초 인증차종의 실차시

험 열화계수 보다 15%이상 크지 아니한 때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3원촉매장치의 열화계수와 당초 인증차종의 실차시험 열화계수 중 높은 항목의 열화계수를 인증변경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배출가스시험에 적용할 것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인정하는 때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기규칙 제56조제1항 단서 또는 소음규칙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항목별 인증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기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소음규칙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의 경우

2. 대기규칙 제5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제작 동일차종으로서 원동기 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3. 자동차의 사용목적상 또는 구입 경위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또는 제작차소음허용기준 달성이 곤란한 고속소방차·세관경매품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일차종별로 연간 예상판매량이 10,000대 이하일 때에는 내구성시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동기의 길들이기 운전은 100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이중 전부하상태 50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구성 시험을 하지 아니한 동일 차종의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의 열화계수(이하 "지정열화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차종의 연간 판매실적이 10,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실제 내구성 시험을 하여 산출한 열화계수를 적용할 때까지 지정 열화계수보다 20% 높은 열화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3] 제목의 관련조항 "(제4조 제2항 관련)"을 "(제4조 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목의 관련조항 "(제4조 제3항 관련)"을 "(제4조 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목의 관련조항 "(제4조 제4항 관련)"을 "(제4조 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환경처고시 제91-25호)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받는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한다.

◎환경처고시제92-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소음진동 규제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처고시 제91-2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1월 17일

환경처장관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중 개정

제4조 중 "전부하상태로 20시간까지"를 "전부하상태의 50시간을 포함하여 100시간까지"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내용: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환경처고시제92-6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진동검사 사용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교정용품 등에 관한 규정(환경처고시 제91-28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1월 17일

환경처장관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진동검사 사용기기의 형식
승인·정도검사·교정용품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표시농도 ±1%"를 "표시농도
3%"로 한다.

[별표 1] 8. 나, (1), (나)와 [별표 2] 9, 4) 및 [별지 제9호 서식] 3. 라 중 "15배 이상"을 각각 "15배 ±
5%"로 한다.

[별표 2] 4. 나, 2). ② 중 "가열시 수소염분석법"을
"가열식수소염분석법"으로 한다.

[별표 2] 6. 나, 5) 중 "변동상관성이 3% 이내"를
"변동상관성이 5% 이내"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목의 관련조항 "(제13조 관련)"을 "(제
12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11호 서식] 1. 일반
사항 난중 "최초정도검사번호"를 각각 "최초정도검
사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정용추에 의한 검량선을 작성할 때 인장 및
압축축의 각 측정점에서 계산치와 측정치의 오
차의 범위가 1% 이내이어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승인내용 난중 "확인검사번호"
를 "최초정도검사일"로 한다.

*별지내용: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환경처고시제92-7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및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
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처고시 제91-29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1월 17일

환경처장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중 개정

제5조 중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미국재료시험학회시험방법(ASTM D4420)”을 “미국재료시험학회시험방법(ASTM D4420, D1319, D3606)”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2. 유독물질함유량의 측정물질난중 “P”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환경처고시제92-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 제81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진동검사및검사용기기·교정용품검사에관한수수료(환경처고시 제91-69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1월17일

환경처장관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진동검사및검사용기기
·교정용품검사에관한수수료증개정

- 제작차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수수료, 가 및 나의 비고난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담당자가 현지출장으로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1일1인 기준 27,400원으로 한다.
- 운행차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수수료의 비고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가스 검사에는 제작이륜차를 포함한다.
(2) 2개항목 측정기기에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때에는 1개항목 측정시에도 같다.
(3) 부가가치세 별도
- 자동차검사용기기, 소음·진동검사용기기 및 교정용품시험 수수료 가와 나 및 마의 비고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2개항목 측정기기에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때에는 1개항목 측정시에도 같다.
(2) 부가가치세 별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내무부고시제92-1호

가야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야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2년 1월17일

내무부장관

- 공원의 명칭 및 종류: 가야산국립공원
- 공원구역의 면적: 80.163km²
-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 용도지구 계획
가. 홍류동집단시설지구: 변경없음
나. 백운동집단시설지구: 변경없음
다. 치인집단시설지구

(단위: m²)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제		62,560	62,560			-
• 숙박시설지		19,612	19,227		△385	
• 상업시설지		2,840	3,225		385	
• 공공시설지		1,262	1,262			
• 녹지		4,370	4,370			
• 기타시설지		34,476	34,476			
도로		13,268	13,268			
주차장		5,160	5,160			
조경휴게지		11,783	11,783			
오수처리장		1,030	1,030			
하천		3,235	3,235			

5. 시설계획: 변경없음

6.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 별첨과 같음(도면생략)

8. 기타: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재무부고시제92-1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9조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92정부회계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동준칙 동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우리부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1월17일

재무부장관

- 고시전명: ’92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 지정
- 지정신청대상자: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20조제1항 각목 해당자로서 동준칙 동조제2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신청서류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지정신청서류: 소정신청서(당부비치) 1부 및 동준칙 제21조제1항 각호의 서류 각1부

('91년도 지정용역기관은 소정신청서, 갑근세증명서,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재표, 각서 각1부 및 기타 기재출된 서류중 변경된 내용만 제출하되, '91년도 용역수행 실적명세서 및 원가계산실적자료 1부를 함께 제출)

4. 지정신청기간 : 1992년 1월20일 ~ 2월15일
5. 지정신청접수처 : 재무부 국고국 회계제도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6. 지정고시 : 1991년 3월중 관보 고시
7. 지정제한 : 지정신청자가 동준칙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함.

◎동력자원부고시제92-2호

1992년도석유사업기금운용관리요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석유사업기금운용계획집행을 위한 '92년도석유사업기금운용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1월17일

동력자원부장관

1. 목적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6항에 의거 석유사업기금운용계획(향후 수정계획포함)의 적정집행을 위한 응자·지원·채무보증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적용범위

- 가.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다른 고시·공고·지침등에 우선하여 적용됨.
- 나. 각 사업별 주무부서는 세부시행에 관하여 따로 고시·공고·지침을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각 주무부서는 고시·공고·지침내용을 기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용어의 정의

- 가. 투자 : 기금이 스스로 석유비축, 저장, 수송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련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것
- 나. 응자 : 기금이 에너지관련사업을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 다. 보조 : 기금이 에너지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지원·손실보

전을 포함한다.

라. 대여 : 응자취급기관이 기금의 실수요자에게 응자할 수 있도록 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기금을 응자취급기관에 응자하는 것

4. 기금사용요구서 제출

- 가. 동력자원부(기금관리부서)는 익년도 기금사용요구서 작성지침을 4월말까지 동자부내 각 실·국 및 공사에 시달
- 나. 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익년도 기금사용요구서를 5월말까지 동자부(기금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월말까지 자료보완 가능

5. 예산의 집행

- 가. 동력자원부(기금관리부서)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항목별 금액 범위내에서 월별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통보, 변경시에도 같음.
- 나. 공사는 통보된 월별자금 집행계획범위내에서 자금을 집행
6. 기금사업 예산명세서 작성 : 공사는 기금운용계획중 공사가 기금에서 직접 시행·집행하는 석유비축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예산서를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7. 기금사업 예산명세서의 집행
 - 가. 공사의 사장은 기금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공사의 명의로 이를 집행(계약, 관리, 처분 등)할 수 있음.
 - 나. 공사의 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력자원부장관(주무부서)의 승인을 얻어 예산과목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단, 건설 가계정의 부대비항목내 인건비목 상호간 및 경비목 상호간의 전용은 공사의 사장이 할 수 있음.
 - 다. 공사의 사장은 비축기지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력자원부장관(주무부서)과 협의하여야 함.
 - 라. 공사의 사장은 비축석유의 경제적 관리를 위하여 비축용 석유매출금액으로 비축유를 재구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석유의 대여(품질 및 물량정산)에 따라 발생되는 석유의 구입비도 이에 준함.

8. '92년도 기금지원 사업내역		관		보	
가. 투자		사업명 세부사업		지원금액(억원) 투자대상자	
사업명	세부사업	지원금액		(3) 비축유구입	10 석유사업
1. 석유	(1) 비축시설건설 · 원유비축시설건설 · 제품비축시설건설 · LPG비축시설건설	960 674 185 101	석유사업	기계	기금 1,073
	(2) 비축시설관리	103	"	2. 장거리송	(1) 장거리송유관건설 · 유관건설사업 · 설사업
				합계	207 (주)대한송유 관공사 1,280
나. 용자					
사업명	세부사업	업	지원금액(억원)	용자 대상자	
3. 국내외자원개발사업	(1) 국내대륙붕개발 (2) 해외유전개발 (3) 해외자원개발 (해외유전개발제외)	37 389 193	한국석유개발공사 개발참여업체 개발참여업체)
	소계	619			
4. 도시가스사업	(1) LNG공급기반구축 (2) 공급사 배관망 (3) 가스냉방	452 61 43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가스냉방기기설치자		
	소계	556			
5.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1) 집단에너지공급 - 신도시지역난방 - 서울시지역난방 - 공업단지열병합발전 (2) 절약시설설치 - 산업체절약시설 - 주택단열개수	906 648 18 240 180 150 30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		
	소계	1,086			
6. 장거리송유관건설사업	(1) 장거리송유관건설사업	509	(주)대한송유관공사		
7. 대체에너지보급사업	(1) 대체에너지이용촉진	100	· 이용시설설치자 및 기자재 생산자 · 생산공급자 또는 협동조합		
8.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 대체에너지기술개발 (2) 에너지절약기술개발	10 10	기술개발사업수행자 "		
	소계	20			
9. 석탄산업지원	(1) 무연탄 저탄사업 (2) 석탄광개발	253 50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소계	303			
합계		3,193			
다. 보조					
사업명	세부사업	업	지원금액(억원)	보조 대상자	
10. 원유도입선다변화	(1) 원유도입선다변화	60	석유정제업자		
11. 석유품질관리	(1) 석유품질관리	9	석유품질검사소		

사 업 명	세 부 사 업	지원금액(억원)	보 조 대 상 자
12. 석유수입손실보전	(1) 석유수입손실보전	200	석유정제·수입업자
13. 석탄산업지원	(1) 폐광대책 (2) 탄가대책지원 - 산재보험료지원 - 자녀학자금지원	241 399 361 38 640	폐광업자 및 근로자 석탄광업자 및 근로자
14. 대체에너지보급사업	(1) 크린에너�토피아	5	사업참여자(실증 및 이용시설 설치자)
15.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 대체에너지기술개발 (2) 에너지절약기술개발 (3) 에너지연구센타지원 (4) 자원활용관지원	23 10 20 40 93	기술개발사업 수행자 및 전문관리기관
16. 석유개발공사운영 합계	(1) 석유개발공사운영비	183 1,190	한국석유개발공사
9. 응자조건			10% 이내(대여금리 8.5%)
가. 국내 대륙붕개발 및 해외유전개발	별도 고시(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응자기준)에 의함.		○상환기간 - 시설자금: 최장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내 다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최장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내
나. 해외자원개발(해외유전개발 제외)			- 운전자금: 최장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내
○응자규모: 소요자금의 100% 이내			마. 장거리 송유관 건설사업 ○응자규모: 소요자금의 100% 이내
○이자율: 연리 6%(대여금리 6%)			○이자율: 연리 10%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내
다. 도시가스사업			바.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응자규모
○응자규모: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운전자금: 소요자금의 70% 이내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설치자는 제외)
○이자율: 연리 5% 이내(대여금리 3.5%)			○이자율 -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연리 5% 이내(대여금리 3.5%)
○상환기간: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내			다만, 운전자금에 대한 응자금리는 연리 10% 이내(대여금리 8.5%), 시설대여회사에 대한 응자금리는 응자취급기관 대여금리에 준한다.
라.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상환기간 - 시설자금: 최장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내 다만, 소수력발전의 경우에는 최장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내
○응자규모			
-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운전자금: 소요자금의 70% 이내(에너지절약기술실용화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이자율			
- 집단에너지사업: 연리 8% 이내(대여금리 6.5%)			
- 주택단열사업: 연리 10% 이내(대여금리 8.5%)			
- 에너지이용합리화 시범사업, 에너지절약기술 실용화사업: 연리 5% 이내(대여금리 3.5%)			
다만, 운전자금에 대한 응자금리는 연리			

<p>- 운전자금 : 최장 1년거치 2년분할상환이내 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대체에너지기술개발 - 응자규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이자율 : 연리 3%이내(대여금리 1.5%) - 상환기간 : 최장 3년거치 5년분할상 오히내 ○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응자규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이자율 : 연리 3%이내(대여금리 1.5%) - 상환기간 : 최장 3년거치 5년분할상 오히내 * 아. 석탄산업지원 ○ 무연탄 저탄사업 - 응자규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이자율 : 연리 5% - 상환기간 : 최장 5년거치 일시상 오히내 ○ 석탄광개발사업 - 응자규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이자율 : 연리 5% - 상환기간 : 최장 2년거치 6년분할상 오히내 10. 응자취급기관등 가. 투자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투자 또는 보조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나"항의 보조금지원 취급기관을 통하여 지급 나. 보조금 지원 취급기관 (1) 석탄산업지원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 대체에너지보급, 에너지기술개발사업중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10조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4조에 의한 전문관리기관 다. 응자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응자대상자에게 직접 응자하거나 "라"항의 대여응자취급기관을 통하여 대여 응자 라. 대여응자 취급기관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가스공급사업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2) 해외자원개발사업(해외유전개발제외) : 대한광업진흥공사 11. 기금의 대여 ① 응자취급기관(공사포함, 이하 같음)은 응자대</p>	<p>상자의 응자신청을 받아 대여일 7일전에 공사에 기금대여 요청. 이 경우 공사는 대여요청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공사는 전항의 요청에 따라 당시점까지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대여하며, 요청액이 기금 보유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금액의 규모와 소진실적을 감안하여 대여액을 조정. 이 경우 공사는 동력자원부와 협의하여 사업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③ 기금 대여는 담보없이 월2회(12월의 경우는 월 3회)로 하고, 대여일은 공사와 응자취급기관간 협의하여 결정 12. 기금의 응자 가. 응자취급기관은 공사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을 본 관리요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응자대상자에게 응자. 다만, 각 개별사업별로 필요시 본 고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 사업별 세부지침에 의할 수 있음. 나. 공사가 직접 응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적용 다. "나"항의 경우에는 응자금에 대한 담보는 물적 담보를 생략하고, 응자대상자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갈음하되, 응자취급기관이 실수요자에게 응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별 세부지침 또는 응자취급기관의 내규에 의할 수 있음. 13. 원리금 상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연4회 균등분할상환(3, 6, 9, 12월의 각 15일) 단, 수입탄지원 및 무연탄저탄지원 사업자금은 기일내 일시상환 이자는 3개월 후취(3, 6, 9, 12월의 각 15일) 14. 기금의 보조 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의 성질상 기성고에 따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취급기관은 매월 소요예상액을 파악하여 기 지원받은 자금중 정산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 나. 사업의 성질상 기성고에 따라 지원이 곤란하여 소요예상액을 파악, 지원한 경우 지원취급기관은 차년도에 전년도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정산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 15. 자금의 용도관리 가. 응자취급기관 및 보조금지원 취급기관은 지원받은 기금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용도관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함.</p>
---	---

<p>필요한 경우 공사는 응자취급기관, 보조금지원 취급기관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음.</p> <p>나. 공사는 대여응자취급기관 및 보조금지원 취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사업의 기금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한 용도관리를 직접 시행</p> <p>다. 응자취급기관은 기금의 응자상황을 익월 7일(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은 익월 25일)까지 공사에 보고</p> <p>라. 공사는 기금의 대여상황과 응자취급기관의 응자상황을 익월 10일(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응자상황은 익월말)까지 동력자원부에 보고</p> <p>마. 기금을 대여, 응자, 보조받은 자(보조금지원 취급기관 포함)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용도외 사용한 금액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을 공사는 즉시 회수이며 또한 향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p> <p>15. 자금의 이월사용</p> <p>가. 기금사용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는 12월31일까지, 공사·응자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자금의 인출은 익년도 2월말까지(석탄산업지원증 탄가대책지원금의 경우는 6월말까지) 완료되어야 함.</p> <p>단,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시(에너지기술개발사업중 보조지원의 경우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출원인행위의 경우는 12월말까지 동력자원부(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인출의 경우는 동력자원부(기금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익년말까지 연기 가능. 이 경우 동력자원부 주무부서는 기금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p> <p>나. “가”항의 지출원인행위란 기금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는 행위를 말하며, 응자사업의 경우 동력자원부, 공사 또는 응자취급기관의 응자승인을, 보조사업의 경우 동력자원부, 공사 또는 보조금지원 취급기관의 보조승인을 말함.</p> <p>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의</p>	<p>사업선정을, 석유비축사업의 경우 계약체결을 “가”항의 지출원인행위로 봄.</p> <p>다. 국내대륙붕개발 및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이월사용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p> <p>2. 동력자원부고시 제91-10('91. 2.22.)호, 제91-11('91. 2.22.)호, 제91-43('91. 8.20.)호, 제91-44('91. 8.20.)호, 제91-71('91.12.30.)호 및 제91-72('91.12.30.)호에 지원이 확정되었으나 1991년12월31일 현재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정한 종전 고시에 의하여 계속 지원한다.</p> <p>3.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조지원금액중 1991년12월31일 현재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미집행된 금액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주무부서)의 승인을 얻어 1992년12월31일까지 이월 사용할 수 있다.</p> <p>4. 본문의 9. 응자조건중 라.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상환기간에 있어서 반월공업공단에 이미 응자한 자금중 1991년12월31일 현재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확정되는 내용으로 그 상환기간을 조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p> <p>◎건설부고시제92-10호</p> <p>1. 서울 도시계획 창전, 중계4, 상계3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지정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p> <p>2. 결정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2년 1 월17일</p> <p style="text-align: right;">건설부장관</p> <p>가.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결정조서</p> <p>○구 분: 신규</p> <p>○구역명: 창전구역</p> <p>○사업구분: 주택개량재개발</p> <p>○위 치: 서울 마포구 창전동 28번지 일대</p> <p>○면적: 39,402m²</p>
---	---

나.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사업구분	위치	면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중계4	주택개량 재개발	서울 노원구 중계동	421 번지 일대	27,982	30,628		58,610	
상계3	"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7 번지 일대	64,820	3,080		67,900	

(별첨 도면 표시와 같습니다. : 도면생략)

◎건설부고시제92-11호

관보 제11600호('90. 8.14.)에 개재된 건설부고시 제504호 신태인도시계획사업(도로: 대로3류4호선) 실시계획인가내용중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992년 1월 17일

건설부장관

가.~라. 종전 고시내용과 같습니다.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1990년 인가일-1991년 12월 31일
- 변경: 1990년 인가일-1992년 12월 31일

바.~사. 종전 고시내용과 같습니다.

◎체신부고시제92-4호

우편물운송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우편물 운송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1월 17일

체신부장관

1. 일반여객자동차 우편물운송료

구	분	요	금	비	고
1편	50kg까지	16원	○종전의 포장, 비포 1km마다		
			장도로 구분 삭제 중량 50kg초과 제한요금의 10kg마다 20%가산		

2. 고속버스 우편물 운송료

구	분	요	금	비	고
1편	50kg까지	1~200km	12원		

○개국내역

감독국명	신설국명	등급	위	일부인면				비고
				치	우편용기호	EDPS번호	한글영문	
부산부전	부산서면	6	부산 부산진구 전포4동	6140446	601385		부산서면 PS. SOMYON	

○개국일: 1992년 1월 27일

○취급업무: 우편(무집배), 우편환·대체, 체신예금·보험, 전보접수

'91 신설우체국 개국 내역

청별 서울 학교	감독국명 서울서초 학교	신설국명 서울교육대	등급 7	관서 서울시 서초동	우편용 치국기호 1377426	EDPS 014225	일부인면		
							한글	영문	개국일 고
부산	부산동래	부산안락동	6	부산시 동래구 6071016	601377	부산안락	PS.	'91.12.30.	유상임차
		안락1동					ALLAK		
마산	마산월영동	마산월영동	6	마산시 합포구 6312626	613612	마산월영	MS.	"	"
		월영2동					WOLYONG		
충청 천	안 천안원성동	천안원성동	6	천안시 원성동	3300706	312694	천안원성	CA.	"
							WONSONG		
충주	충주연수동	충주연수동	6	충주시 연수동	3801006	301432	충주연수	CJ.	"
							YONSU		
경북 남 대	구 대구봉덕3동	대구봉덕3동	6	대구시 남구 봉 7050236	704007	대구봉덕3	TG.	'92. 1.20.	"
		덕3동					PONGDOK3		
전북 전	주 전주서노송	전주서노송	6	전주시 덕진구 5600901	402339	전주서노송	CJ.	'91.12.30.	"
	동	서노송동					SONOSONG		
제주 서 귀	포 제주중문단	제주중문단	7	서귀포시 색달 6971306	510461	제주중문단	CJ.	'92. 1.15.	무상임차
	지	동				●	지	CHUNG MUN	
							DANJI		
계	8국	6급6							유상임차6
		7급2							무상임차2

◎국립지리원고시제8호·제9호

공공측량 성과를 측량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1 월 17일

국립지리원장

고시제8호

측량의 종류	공공측량(부천시 도시계획도 제작)
측량계획기관	부천시
측량지역	부천시 전지역
성과구분	지형현황도
공수량	32도엽
공정화도	축척: 1:3000 평면오차: 0.5mm 이내 등고선 간격: 주곡선 2m 계곡선 10m 도면의 크기: 세로 46.7cm 가로: 66.7cm
측량기간	1991년 3 월 25일 ~ 1991년 10 월 3 일
성과보관장소	부천시

고시제9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온산사업소 산업폐기물 매립장 기본설계)
측 량 계획 기관	환경관리공단
측 량 지 역	경남 울산군 온산면 원산리
성 과 구 분	지형현황도
공 수 량	1도엽
공 정 확 도	축 척 : 1:600 시오차 : 0.5mm이내 등고선 간격 : 주곡선 1m 계곡선 5m 도면의 크기 : 세로 84cm 가로 189cm
측 량 기 간	1991년 11월 6일 ~ 1991년 11월 16일
성 과 보 관 장 소	환경관리공단

◎국립지리원고시제10호

측량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본측량 측량 표 이전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1월 17일

국립지리원장

구	분 내	용 비	고
1. 측 량 의 종 류	기본측량		
2. 측 량 계획 기관	국립지리원		
3. 측 량 표 종 류	기본삼각점		
4. 측 량 의 점 수	4점		
5. 측 량 지 역	NI52-6-4 대구 302	경남 하동군 금남 면 계천리	

구	분 내	용 비	고
NI52-6-4 대구 402	경남 하동군 금남 면 갈사리		
NI52-6-4 대구 404	경남 하동군 금남 면 가덕리		
NI52-6-4 대구 406	경남 하동군 금남 면 대도리		
6. 정 확 도	±3cm		
7. 이 전 일	1991년 12월 30일		
8. 성과보관장소	국립지리원		

공 고**◎공보처공고제92-1호**

1991년도 납본정기간행물보상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1991년 12월 10일까지 납본된 정기간행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1월 17일

공 보 처 장 관

- 보상신청대상간행물 : 1991년 1월 1일 ~ 12월 10일 기간중 납본된 유가 정기간행물(주간이하)
- 보상기준 : 정가의 50%
- 신청기간 : 1992년 1월 25일 ~ 2월 20일
- 신청접수처

○주간지 : (사)한국주간신문협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8-14 (720-3251)

○접 지 : (사)한국잡지협회

서울 종로구 청진동 174-1 (738-7328~9)

◎상공부공고제92-2호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92년도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1월 17일 상 공 부 장 관

'92년도 우수디자인 상품선정계획

- 선정목적 : 우수디자인 상품을 선정 장려하여
 - 상품의 디자인개발 촉진 및 아이디어 창출
 -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

다.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임.
 라.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및 관심 고취
 2. 선정주관기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3. 신청자격
 가. 해당상품을 제조하는 자
 나. 해당상품을 자신의 고유상표로 판매하는 자
 4. 선정신청 접수기간: 1992년 3월 20일(금) ~ 3월 24일(화)
 5. 선정대상품목

부문별 세부품목
전기 · 전자 ◇텔레비전 ◇전기냉장고 ◇선풍기 ◇마이크로폰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전기청소기 ◇카세트 ◇전자레인지 ◇에어콘 ◇가습기 ◇라디오 ◇VTR 및 VTR카메라 ◇전기스토브 ◇Audio System ◇자동차용 음향기기(라디오, 카세트등) ◇텔레비전수상기용 부스터
주택설비 ◇욕조류(법랑, 스테인레스 강판, 인조대리석, 유리섬유강화 플리에스테르제) ◇배선기구 ◇수도꼭지 ◇도자기질타일 ◇가정용주방용구(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물버팀대, 복합취사대 등) ◇Door Handle 및 Lock ◇도어클로저 ◇위생도기(세면기, 양변기, 변기, 비데기 등)
레저 · 스포츠 경기 ◇테니스라켓 ◇자전거 ◇체중계 ◇쌍안경 ◇운동화 ◇카메라 ◇안전모 ◇피아樵미용품 노트 ◇물안경 ◇동산장비류 ◇오르간 ◇전자피아노 ◇보안경 ◇기타 ◇전자건반 ◇DRUM ◇전자오르간 ◇멜로디온 ◇크로마하프 ◇낚시 릴 ◇배드민턴라켓 ◇낚싯대 ◇자전거용 공기펌프
사무기기 (문구) ◇볼펜 ◇만년필 ◇휴대 및 탁상용계산화용 책걸상 ◇타자기 ◇복사기 ◇전자서류보관함 ◇사무용품류 ◇샤프연필 ◇문서편집기
완구 및 아동용구 어린이용 그네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미끄럼틀 및 칠봉(실내용) ◇유아용 삼륜차 ◇고무 또는 플라스틱완구 ◇기타 유아용품 ◇승용차용 어린이 보조좌석

부문별 세부품목
일용품 ◇라이터 ◇우산 및 양산 ◇손톱깎기 ◇유리제온도계 ◇보온용기 ◇전기스탠드 ◇진공보온병 ◇전기솥 ◇보온도시락 ◇가스레인지 ◇압력솥 ◇전기그릇세척기 ◇전기쥬서 ◇석유레인지 ◇시제 ◇전기Matt사지기 ◇석유난방기구 ◇압력냄비 ◇모발건조기 ◇전기약탕기 ◇식기류 ◇식기전조기 ◇면도기 ◇전기순간탕비기 ◇욕실용기물류 ◇주방용기물류 ◇저울 ◇옥수수튀김기 ◇가스난방기구 ◇전기후라이팬 ◇정수기 ◇전기우유포트 ◇이온수기 ◇전기보온밥통 ◇타이머 ◇공기청정기 ◇산업도자(커피세트, 단반상기) ◇옷걸이 ◇전기토스터 ◇가위 ◇조리용구 ◇전기장판 ◇헤드폰 ◇후레쉬 ◇아이스크림후리저 ◇전기포트 ◇전기면도기 ◇실내청소용구류 ◇전기다리미 ◇전기믹스 ◇가정용 소형변압기 ◇액화석유가스용 순간온수기
운송기기 ◇승용차(자체 디자인 개발품에 한함) ◇이륜승용차(자체 디자인 개발품에 한함)
산업기계
정보통신 기기 ◇도아폰 ◇Facsimile기 ◇인터넷 ◇통신장비 및 주변기기(전화기류 포함) ◇Personal Computer 및 P/C용 Printer
교육용품 ◇파레트 ◇망원경 ◇광학현미경 ◇반사투영기 ◇자연학습교재 ◇학생용 필통
의료기기 ◇수술등 ◇치과용 의료대
기타 ◇핸드백 ◇혁대 ◇지갑 ◇바이메탈 운동계 ◇열쇠고리 ◇여행용가방 ◇학생용가방 ◇안경테 ◇승용차용 악세사리 ◇식탁 및 식탁의자

6. 선정신청

가. 선정 신청대상: 공고전 1년이내에 국내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산업디자인 상품

나. 선정신청할 수 없는 상품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는 산업디자인 상품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산업디자인 상품

-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산업디자인 상품
- (4)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산업디자인 상품
- (5) 국내기술 및 시설의 미비로 품질검사를 못하는 산업디자인 상품
- (6) 1991년도 이전에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시 신청하였던 산업디자인 상품

7. 선정기준

- 가.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으며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
- 나. 상품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 사용상의 편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 다.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 라. 대량생산이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8. 선정회수 : 년1회

9. 심사방법 : 디자인분야 및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심사, 2차심사 및 최종심사를 엄정히 실시하여 선정함.

10. 신청방법

해당상품 1개(필요시 1개이상)와 신청서류(소정양식)를 구비, 다음의 신청수수료와 함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신청하여야 함.

가. 신청수수료 : 상품의 무게와 부피에 따라 다음과 같음.

○무게 500g미만 또는 부피 1,000m³미만 상품 : 5,000원

○무게 25kg이하 또는 부피 125,000m³이하 상품 : 15,000원

○무게 25kg초과 또는 부피 125,000m³초과 상품 : 30,000원

※ 단, 상품의 부피는 포장을 제외한 상품을 완전 조립한 상태의 바깥치수를 적용하여 산출함.

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회사당 1매
- (2) 상품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상품 1종당 2매(상품사진 2매 첨부)

(3) 상품설명서(소정양식) : 신청상품당 2매

(4) 상품목록표(소정양식) : 신청상품당 3매

※단, 각종 양식은 부족시 복사사용이 가능함
(A4)

11. 품질관계 증빙서류 제출

제1차 심사에서 통과된 상품에 대하여는 다음 제출서류중 1매이상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1) 제출서류

○OKS표시 상품은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자표시 상품은 품질등급 사정서 사본

○검자표시 상품은 검사증 사본

○Q마크 표시 상품은 그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소 반행서류

○기타 상품은 그 품질이 KS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KS기준, KS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검사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기준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검사 성적서

(2) 제출기간 : 1992년 4월 6일 ~ 4월 24일

12. 선정결과 발표

가. 1차 심사결과 발표 : 1992년 4월 1일(수) ~ 4월 4일(토)까지 개별통지 함.

나. 2차심사와 최종검사는 병행 실시하며, 그 결과는 개별통지하고, 선정된 상품에 한하여 5월 중 일간지에 공고함.

13. 선정상품 등록 안내

선정품의 신청인은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가. 구비서류

(1) 우수디자인상품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각 등록신청상품별 외형도면 및 색견본 1부

(3) 상품을 파악할 수 있는 칼라사진(가로 : 101mm, 세로 : 76mm)4매

①상품전체가 잘 이해되는 각도(특히 청장등록 사서도에 준함)에서 촬영한 것 2매

②사진①에서 확인불가능한 상품의 반대측면을 촬영한 것 2매
단,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사진을 추가 제출함.

나. 신청수수료 : 등록상품 1점당 20,000원

다. 등록기간 : 최종 심사결과 발표와 함께 통보

14. 선정품의 특전

가. 우수디자인상품 표지(GD마크) 사용

<p>선정품으로 등록된 상품은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임을 표시하는 GD마크를 산업디자인포장 개발원과 마크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사용할 수 있음.</p> <p>나. 중소기업 기술선진화업체 평가시 평가점수에 반영됨.</p> <p>다. 선정집 제작·배포: 선정품의 카탈로그를 제작 국내외에 배포함.</p> <p>라. 소비자 교육실시: GD마크제와 선정품의 홍보를 위하여 소비자교육을 실시함.</p> <p>마. 선정품 전시: 선정품은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제 및 선정품의 홍보를 위하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전시를 함.</p> <p>바. 제도 홍보책자 발행·배포 및 언론매체를 통한 수시 홍보</p> <p>15. 탈락상품 반출기간</p> <p>가. 1차심사 탈락품: 4월1일~4월8일</p> <p>나. 2차 및 최종심사 탈락품: 5월6일~5월9일</p> <p>다. 선정품: 6월1일~6월5일</p> <p>※기간중 반출하지 아니한 상품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p> <p>16.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8(우편번호 110-460)</p> <p>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전홍홍보부 전홍파(전화 766-6705, 745-7249)(FAX: 745-5519)</p>																							
<p>◎건설부공고제92-5호</p> <p>광주직할시고시 제174호('91.12.26.)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광주 하남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2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1992년 1 월17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부장관</p> <p>1. 사업명칭: 광주하남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p> <p>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명 칭: 한국토지개발공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대표자성명: 사장 김영진</p> <p>3. 사업시행지의 위치: 광주 광산구 우산동일원</p> <p>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p> <p>6.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사항</p> <p>가. 토지관리처분</p>	<p>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단계)</p> <p>1) 총사업면적: 775,734.7m²</p> <p>2) 용도별 면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 면 적 (m²)</th> <th>현 소 유 자</th> <th>관 리 처 분 사 항</th> </tr> </thead> <tbody> <tr> <td>○주택건설용지</td> <td>213,551.2</td> <td>한국토지개발공사</td> <td>지자체, 주택공사, 주택건설업자 실수요자에게 공급</td> </tr> </tbody> </table>															구	분 면 적 (m ²)	현 소 유 자	관 리 처 분 사 항	○주택건설용지	213,551.2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자체, 주택공사, 주택건설업자 실수요자에게 공급
구	분 면 적 (m ²)	현 소 유 자	관 리 처 분 사 항																				
○주택건설용지	213,551.2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자체, 주택공사, 주택건설업자 실수요자에게 공급																				

구	분 면 적 (m ²)	현 소유자	관 리 처	분 사 항
○상업용지	215,199.1	한국토지개발공사	실수요자에게 공급	
○공공시설용지	346,984.4	"		
도로	215,531.4	"	광주직할시에 무상귀속	
공원	15,500.6	"	"	
녹지	5,230.2	"	"	
학교	27,637.9	"	광주직할시 교육청에 공급	
공용의 청사	26,672.9	"	국가 및 지자체에 공급	
공공의 공지	767.6	"	실수요자에게 공급	
광장	31,740.4	"	광주직할시에 무상귀속	
주차장	10,647.7	"	지자체 및 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 공급	
자동차정류장	13,256	"	실수요자에게 공급	

나.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다.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광주직할시청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서 첨부생략)

◎공업진흥청공고제92-78호

한국공업규격표 시허가

공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
공업규격의 표시를 허가(품목추가)하였기 동법시
행규칙운용요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1992년 1 월 17 일

공업진흥청장

- 허가업체명 : 효성화학주식회사
 - 대표자명 : 이길우
 - 소재지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8-12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 제8975호
 - 규격번호 : KS M 3362
 - 규격명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관
 - 등급 또는 호칭 : 1종, 2종

5. KS마크 표시방법 : 생략

◎해운항만청공고제92-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중 집행할 용역사업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1 월 17 일

해운항만청장

'92년도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시행기관	총사업비 ('92예산)	입찰예정시기
다대포항 타당성조사 및 기해운항만 청본계획용역	○입지의 비교검토 및 결정 ○항만개발 및 배후수송망 기본계획 수립 ○기술적, 경제적인 개발 타당성검토 ○배후수송시설(도로, 철도) 기본계획 24km ○배후수송시설 실시설계(도로, 철도 5.8km)	770 (770) 2.500 (2.500)	'92. 3.
광양항배후도로 실시설계용역	○개발여건, 전망분석 및 개발규모설정 ○종합항만개발구상 및 항만개발의 장기수립	500 (500)	"
포항광역 개발타당성조사용역	○개발여건, 전망분석 및 개발규모설정 ○항만시설의 장기수요	300 (300)	"
충청권신항만개발 타당성조 해운항만 청사용역	○현지조사, 기본계획검토 ○사업영향평가(환경 교통) ○실시설계	350 (350)	"
울산항 7.8부두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 남측안벽 1,620m - 3부두안벽 420m - 야적장, 전기, 급배수등 부대시설 1식	1,000 (1,000)	'92. 2.
군·장신항남측도류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도류제 2,817m) ○군산내항정비계획 1식 ○금강하구수리변화조사 1식	1,000 (1,000)	"

◎조달청부산지청공고제92-2호

부산직할시 관내 각 수요기관에 공급할 저유황경유(난방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992년 1월 17일

조달청부산지청장

1. 단계계약현황

- 정부물품분류번호 : 9140-016-1004
- 품명 : 저유황경유(난방용)
- 단위 : 리터
- 단가(원) : 163.65
- 비고 : 부가세 포함. 수수료(1%) 별도
- 2. 인도조건 : 수요기관 저장탱크주입도

3.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20일

4. 검사, 검수 : 수요기관

5. 적용시기 : 1992년 1월 10일 납품요구분부터

◎대전지방환경청공고제92-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992년 1월 17일

대전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 : (주)하나환경
2. 대표자 : 길왕섭

3. 영업소 소재지 : 대전직할시 대덕구 중리동 384-9
 4. 실험실 소재지 : 상동
 5. 업종 및 등록번호
 ○대기오염 방지시설업(제2-34호)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제3-24호)
 ○수질오염 방지시설업(제4-50호)
 6. 등록연월일 : 1992년 1월 10일

◎대전지방환경청공고제92-2호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992년 1월 17일

대전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 : 광동전기건설(주)
 2. 대표자 : 임상빈
 3. 영업소 소재지 : 충남 온양시 온천동 134-5

4. 실험실 소재지 : 충남 온양시 온천동 134-5
 5. 등록취소 업종 및 번호
 ○수질오염방지시설업(제4-45호)
 6. 등록연월일 : 1992년 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92-4호

도로사용개시및폐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및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국도 제40호선의 관계도서는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국도 제3호선·제5호선의 관계도서는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국도 제36호선의 관계도서는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합니다)

1992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노 선 명	사 용 개 시 구 간	사 용 폐 지 구 간
국도 제40호선	시점 : 공주 이인 초봉 91-2 (584m) 종점 : 공주 이인 용성 247-3	시점 : 공주 이인 초봉 94-2 (628m) 시점 : 공주 이인 초봉 562
국도 제3호선	시점 : 괴산 연풍 행촌 271-3 (446m) 종점 : 괴산 연풍 행촌 259-4	시점 : 괴산 연풍 행촌 272-1 (160m) 시점 : 괴산 연풍 행촌 859
국도 제5호선	시점 : 단양 대강 용부원 8-2 (160m) 종점 : 단양 대강 용부원 산11-3	시점 : 단양 대강 용부원 산11-2 (160m) 시점 : 단양 대강 용부원 산 13-33
국도 제36호선	시점 : 보령 청라 의평 828 (340m) 종점 : 보령 청라 의평 547-3	시점 : 보령 청라 의평 828 (340m) 시점 : 보령 청라 의평 547-3

◎여수지방해운항만청공고제92-2호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멸실재교부한 다음 해기사 면허증이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다.

1992년 1월 17일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면 종 및 면 허 번 호	면 허 일 자	성 명	재 교 부 일 자	비 고
YS-D4-91-0003	'91. 3. 28.	임 경 석	'91. 7. 25.	멸 실 재 교 부
YS-F4-88-0006	'81. 4. 7.	김 효 경	'91. 8. 19.	"
YS-F4-88-0004	'72. 9. 12.	이 정 주	'91. 7. 31.	"
YS-F4-89-0089	'89. 11. 29.	김 대 평	'91. 3. 2.	"
YS-E4-89-0170	'89. 9. 12.	최 황 호	'91. 9. 9.	"
YS-E4-89-0011	'77. 10. 19.	이 효 섭	'91. 8. 17.	"
YS-E4-89-0036	'83. 9. 23.	정 상 만	'91. 7. 25.	"
YS-E4-89-0027	'81. 7. 3.	김 종 순	'91. 7. 3.	"
YS-F3-88-0040	'88. 3. 31.	윤 종 민	'91. 10. 12.	"
YS-F3-88-0004	'88. 3. 1.	송 승 용	'91. 8. 2.	"
YS-E6-89-0168	'83. 9. 30.	김 찬 열	'91. 11. 29.	"
YS-E6-89-0128	'80. 9. 29.	명 민 재	'91. 11. 26.	"

면 종 및 면 허 번 호	면 허 일 자	성 명	재 교 부 일 자	비 고
YS-E6-89-0591	'76. 8.10.	윤 길 철	'91.10.12.	멸 실 재 교 부
YS-E6-89-0685	'82.10.16.	김 명 수	'91.10.10.	"
YS-E6-90-0024	'90. 6. 7.	김 상 선	'91. 7.29.	"
YS-E6-89-0592	'76. 8.13.	강 진 수	'91. 7.25.	"
YS-E6-89-0165	'81. 2. 3.	정 용 길	'91. 7.19.	"
YS-E6-89-0651	'77. 4. 2.	이 동 기	'91. 3.11.	"
YS-E6-89-0601	'81.12.23.	임 효 민	'91. 2. 7.	"
YS-E6-89-0856	'89.12.30.	정 행 길	'91. 2. 1.	"
YS-E6-88-0004	'88. 3. 3.	정 정 용	'91. 1.11.	"
YS-G6-89-0343	'82.12.15.	조 정 현	'91. 9.27.	"
YS-G6-89-0661	'89. 4. 8.	김 문 용	'91. 9. 9.	"
YS-G6-89-0377	'70. 9. 7.	오 운 길	'91. 7.31.	"
YS-G6-89-0421	'82.12.17.	박 상 규	'91. 6.17.	"
YS-G6-89-0212	'79. 6.28.	박 흥 근	'91. 5.17.	"
YS-E5-86-0029	'86. 3.13.	김 재 윤	'91. 1.11.	"
YS-R2-88-0012	'85. 7. 1.	임 영 주	'91. 4.24.	"
YS-R2-88-0003	'88. 3.30.	김 광 모	'91.10.14.	"
YS-R2-87-0009	'87. 3.24.	유 장 종	'91.10.12.	"
YS-G3-86-0034	'86. 9.15.	안 성 필	'91. 9.17.	"
YS-E5-89-0080	'72. 5.12.	윤 용 기	'91.12.16.	"
YS-E5-89-0102	'77.10. 7.	김 수 재	'91.11. 5.	"
YS-E5-89-0036	'72. 8. 7.	명 지 흥	'91. 7.16.	"
YS-E5-90-0010	'90. 4.19.	양 먹 성	'91.12.9.	"
YS-F3-87-0030	'87. 9.16.	김 영 태	'91. 2.13.	"
YS-F3-86-0067	'86. 8.30.	김 성 식	'91. 2. 8.	"
YS-S7-91-0017	'91. 5. 3.	김 창 근	'91. 9. 5.	"
YS-S7-91-0006	'91. 3. 5.	김 상 선	'91. 7.29.	"
YS-E3-89-0023	'89. 3. 1.	서 동 호	'91. 1.19.	"

입찰공고

◎조달청내자공고제92-7호

조달물자(내자)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권 유 품	명 단	수 량	입 찰 일 시	입 찰 방 법	구 매 담 당 과	입 찰 장 소	비 고
9210024 소형소방차등	종	2	'92. 1.23. 13:50	일반(분류)	내자1과	제2입찰실	긴급 별단가)
9210026 굴삭기(크롤러식)등	"	5	'92. 1.29. 13:50	"	"	"	"
9220025 강판	톤	3,031.710	'92. 1.29. 11:00	일반(총액)	내자2과	"	

2. 참가자격 : 조달청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증소지
자로서 제조업체

3. 제출서류 : 입찰전일까지 다음 서류를 구매담당

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신청서(일반경쟁 입찰참가자는 입찰
보증금 납부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동거속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은 입찰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당첨 경리 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무효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에 의합니다.
6. 기타 : 당첨 민원봉사실(599-3030) 및 구매담당과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 1 월17일

조 달 청 장

◎치료감호소공고제92-1호

의약품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품 명 : 의약품 염산플루라제팜 15mg외 196종
2. 물품설명 일시 및 장소 : 1992년1월27일 15:00
당소 회의실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1992년1월30일
17:00 당소 감호과
4. 입찰일시 및 장소 : 1992년1월31일 14:00
당소 회의실
5.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6. 입찰참가자격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당소에 비치한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특수조건을 승락하고 물품설명을 청취한 자에 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거속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소 감호과(0416-53-26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 1 월17일

치료감호소 재무관

◎축산시험장공고제2호

연간단가계약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밀기울 및 대두박 연간 단가계약
2. 연간소요예상량 : 밀기울 295,000kg
대두박 248,000kg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등록마감 및 설명일시 : 1992년1월22일 17:00
5. 입찰일시 : 1992년1월23일 14:00
6. 입찰자격
- 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 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합니다.
9. 기타 :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시험장 관리과(수원 292-4511~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 1 월17일

축산시험장 재무관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공고제92-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부녀복지관 청사청소 역무용역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1992년1월23일 11시
(부녀복지관)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1992년1월27일
17시 (부녀복지관)
4. 입찰일시 및 장소 : 1992년1월28일 14시
(부녀복지관)
5. 입찰참가자격
- 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인천직할시 관내에 있는 업체
- 나.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 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
6. 입찰보증금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마감일 까지 부녀복지관에 납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부녀복지관에 귀속됩니다)
7. 입찰무효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인천직할시에서 발행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녀복지관(425-1372)으로 문의 바랍니다.

1992년 1 월17일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장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1호

입찰참가자격등록공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당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의 참가자격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 1 월17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경리관

1. 등록기간 : 1992년1월20일~1992년1월31일

2. 등록대상

-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 토목)면허 소지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1종 및 2종 면허소지자
 -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업 1·2종 및 2종 면허소지자
3. 등록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관리국 재무과
4. 신청서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1통(소정양식)

3.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장소

구	현 장 설 명		입 찰	
	분 일	시 장	소 일	시 장 소
황구지천(병점리)	'92. 1.21. 09 : 30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송산교	'92. 1.27. 13 : 30	화성군청 구내식당
황구지천(발산리)	'92. 1.21. 10 : 00	정남면 발산리 용수교	'92. 1.27. 14 : 00	"
오산천(석우리, 금곡리)	'92. 1.21. 11 : 00	동탄면 석우리 석우교	'92. 1.27. 14 : 30	"
남양천, 무봉천	'92. 1.21. 13 : 30	남양면 남양리 북양교	'92. 1.27. 15 : 00	"

4. 입찰참가자격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의4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취급 사업자로서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등록업자

5. 입찰등록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청비치)
- 나. 인감증명서 1통(입찰용)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라. 자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1부

6.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사항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시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본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기간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본군에 귀속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1통

○건설업 면허증 사본 1통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통

○등기부등본 1통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통

○입찰참가 대리인 신고서 1통

(위 사본제출시 원본 제시)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청 재무과(전화 520-7282, 7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군공고제1호

하천풀재매각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황구지천(병점리)외 3건
70,678m³(모래 및 혼합풀재)

2.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1992년1월23일
17:00 화성군청 건설과

8. 대금납부

-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 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내(계약체결시)완납하지 않을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계약의 특수조건 : 현장설명시 설명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군 건설과 관리계(73-30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 1 월17일

화 성 군 수

◎제천시공고제7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농고~두학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
○과업설명일시 : 1992년 1월 24일 14:00 건설과
○입찰등록마감 : 1992년 1월 27일 17:00 회계과
○입찰일시 : 1992년 1월 28일 12:00 회의실
○입찰방법 : 총액
 2. 입찰참가자격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종합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으로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 기술분야 등록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보증금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에 의합니다.
 5. 소정의 낙찰자는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회계과(0443-40-626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 1월 17일

제천시 경리관

◎선산군공고제92-4호

공사일반공개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장천~효령간 도로 포장공사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1992년 1월 25일 10:00 장천면 상장리현장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1992년 2월 1일 13:00 당군 재무과
○입찰일시 및 장소 : 1992년 2월 6일 11:00 당군 회의실
 2. 입찰참가자격 :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공사) 및 특수건설업(포장공사)면허 겸유업체로서 경상북도내에 본사를 둔 자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등록과 동시에 당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군에 귀속됩니다.
 5.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규정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군 재무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1992년 1월 17일

선산군 경리관

◎순천시보건소공고제1호

'92년도 단가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예방접종 약품 및 예산액

○간염 예방백신(헤파박스, 헤파신, 엔제릭스-B) : 31,000천원 ('92 예산액의 범위 내)

○수두 예방백신 : 49,500천원 ('92 예산액의 범위 내)

○독감 예방백신 : 7,000천원 ('92 예산액의 범위 내)

나. 일반 의약품 및 예산액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의료보험대상 약품 중 당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 : 27,280천원 ('92 예산액의 범위 내)

다. 병리검사 시약 및 예산액

○B형간염 검사 시약 외 4종 : 13,000천원 ('92 예산액의 범위 내)

2.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 : 1992년 2월 10일 11:00 순천시보건소

3.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 1992년 2월 11일 17:00 순천시보건소

4.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예방접종 약품 : 1992년 2월 12일 13:00 순천시보건소

나. 일반의약품 : 1992년 2월 12일 14:00 순천시보건소

다. 병리검사 시약 : 1992년 2월 12일 15:00 순천시보건소

5. 입찰참가자격

가. 약사법 제35조2항(의약품의 판매 허가)동법 제37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규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허가를 득하고 영업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자

나. 본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유의서를 수락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일반경쟁계약)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현품설명 참가 및 등록을 필한 자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6조

- (입찰보증금) 및 동법 제97조(입찰보증금의 귀속) 계약사무처리규정 제34조(입찰보증금의 납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5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조건 공시 장소: 순천시보건소
9. 지역개발 공채 소화: 낙찰 계약자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채(공급 가액의 5%)의 매입 필증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보건소(0662-744-3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 1 월17일

순천시보건소 분임경리관

◎청송군보건의료원공고제1호

의약품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파세몰외 308종
2.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 1992년 1월 21일 10:00
청송군보건의료원 회의실
3. 입찰동록마감 일시 및 장소: 1992년 1월 28일
17:00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계

4. 입찰일시 및 장소: 1992년 1월 29일 14:00
청송군보건의료원 회의실
5.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단가 입찰이며 최저가격 낙찰자로 합니다.
6. 참가자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 1항의 규정에 의한자이며 주된 영업소를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약품도매업 협력자로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및 제120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조건 공시장소: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9. 입찰의 무효: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계약된 품목 수량의 추가납품 및 계약품목 이외의 품목납품시 대금은 낙찰율에 의한 단가로 산정합니다.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계(72-7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 1 월17일

청송군보건의료원 분임경리관

지방행정**◎부산직합시고시제92-6호**

건설부고시 제243호('90. 5. 9.) 및 건설부고시 제512호('90. 8. 17.)로 결정된 부산 도시계획(재개발구역)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직합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2년 1 월17일

부산직합시장

○재개발구역지적고시조서

구 분	구 역	명 사	업 구	분 위	치 면 적 (m ²)
신 설	부산 좌천, 범일구역	도심지재개발사업		동구 좌천3동 68-164, 범일5동 252-	132,700
"	부산 광복동구역	"		954 일대	2,410

*별첨 도면표시와 같습니다(도면생략).

◎광주직합시고시제92-4호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정정
관보 제12010호('92. 1. 4.)에 개재된 광주직합시고시 제91-17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정정고시 내용중 착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1992년 1 월17일

광주직합시장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부 분	시 설	명	규 정	모(m ²)
변 경	제19호	공원	3,011,952	3,001,952

○경상북도고시제92-9호

점촌 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의

개발기간 및 실시계획의 시행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1992년 1 월17일

경상북도지사

○개발계획 개발기간

기정 : 1990년 12월 27일 ~ 1991년 12월 31일

변경 : 1990년 12월 27일 ~ 1992년 12월 31일

○실시계획 시행기간

기정 : 1991년 1 월 28일 ~ 1991년 12월 31일

변경 : 1991년 1 월 28일 ~ 1992년 12월 31일

○경상북도고시제92-10호

영천 도시계획 망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결정도서 사본을 영천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2년 1 월17일

경상북도지사

가. 영천 도시계획 망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 별항

나. 영천 도시계획 망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도면 : 별첨(계재생략).

○영천 도시계획 망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 사업구역

○연기사유 및 시행기간

상 호	사 업 명	시 행 기 간		
		당초	변경	경
신화기공사 김영억	공장부지조성	'91. 3.10.~'91.12.31.	'91. 3.10.~'92.12.31.	
(주)정보 송창규	"	'85. 1.~'91.12.31.	'85. 1.~'92.12.31.	
유일산업(주) 김충태	콘테이너부품생산	'83. 3.31.~'91.12.31.	'83. 3.31.~'92.12.31.	
유성공업사 이상걸	"	'89.10.~'91.12.31.	'89.10.~'92.12.31.	
(주)대한종합산업 박병달	자동차부품생산공장신축	'79.11.20.~'91.12.31.	'79.11.20.~'92.12.31.	
대창스프링공업사 조희오	"	'90. 6.14.~'91.12.31.	'90. 6.14.~'92.12.31.	

○경상남도고시제9호

옥포 국가공업단지내 특수선박 건조기반시설 조성사업 시행기간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 승

구분	지 구	위 치	면적(m ²)
신설	영천 망정지구	영천시 망정·신기	242,420
	토지구획정리사	동 일원	
	업		

○경상남도고시제7호

건설부고시 제983호('90.12.26.)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되고 경상남도고시 제486호('90.12.31.)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바 있는 진해 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이에따른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남지사와 진해시청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1992년 1 월17일

경상남도지사

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용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986년 9 월22일 ~ 1991년 12월 31일
- 변경 : 1986년 9 월22일 ~ 1992년 9 월30일

2. 관계도면 : 생략(변경없음)

○경상남도고시제8호

울산·미포국가공업기지내 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시행기간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1 월17일

경상남도지사

시 행 기 간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1 월17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 옥포조선소 서북지구 건설사업

2. 위치 : 경남 장승포시 아주동 일원
 3. 시행자 상호 및 주소
 · 상호 : 대우조선공업(주) 대표이사 박동규
 · 주소 : 경남 장승포시 아주동 1
 4. 시행기간
 · 당초 - 1989년 3 월 21일 ~ 1991년 12 월 31일
 · 변경 - 1989년 3 월 21일 ~ 1992년 12 월 31일

◎경상남도고시제10호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내 철구조물 제작 및 조립식 주택 자재생산공장부지 조성사업시행기간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1 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 철구조물 제작 및 조립식 주택자재생산

- 공장부지조성
 2. 위치 : 울산시 남구 여천동 381-1 일원
 3. 시행자 상호 및 주소
 · 상호 : 한동산업개발 대표 이병관
 · 주소 : 울산시 남구 신정동 1680
 4. 시행기간
 · 당초 - 1990년 11 월 27일 ~ 1991년 11 월 30일
 · 변경 - 1990년 11 월 27일 ~ 1992년 11 월 30일

◎여천군고시제92-1호

어선등록필증무효

다음 어선은 어선법 제15조제1항의 폐선으로 직권말소등록하였기 어선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무효증서임을 고시합니다.

1992년 1 월 17일

여 천 군 수

소 유 자

증서의교부
년 월 일

증서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명칭	총톤수	주	소 성 명	증서의교부 년 월 일
어선등록증	JS5060-D537	만덕	1.26	남면 심장리 718	강 전 만	'79. 6.11.
"	JS5060-D716	춘화	1.02	화정면 월호리 549-2	정 준 채	'83. 4.12.
"	JS5060-D611	일성	1.06	화양면 옥적리 1685	이 순 구	'79. 6.15.
"	JS5060-D612	회남	1.09	화양면 옥적리 1698	김 회 남	'79. 6.15.
"	JS5060-D610	구봉	1.05	화양면 옥적리 1686	김 황 구	"
"	JS5060-D609	대성	1.05	화양면 옥적리 1641	김 은 식	"
"	JS5060-D613	성광	1.05	화양면 옥적리 1664	서 봉 석	"
"	JS5060-D914	송언	1.07	돌산읍 평사리 167	최 송 언	'79. 7. 3.
"	JS5060-D915	창성	1.20	돌산읍 평사리 434	윤 기 조	"
"	JS5060-D894	거행	1.04	돌산읍 평사리 5-1	김 의 현	"
"	JS5060-D895	윤태	1.11	돌산읍 평사리 240	김 채 균	"
"	JS5060-D896	광운	1.07	돌산읍 평사리 207	김 광 무	"
"	JS5060-D897	부양	1.09	돌산읍 평사리 163	최 부 석	"
"	JS5060-D898	길제	1.13	돌산읍 평사리 68	강 기 섭	"
"	JS5060-D899	이성	1.09	돌산읍 평사리 271	이 세 노	"
"	JS5060-D900	태영	1.29	돌산읍 평사리 421-1	박 태 순	"

◎창원시고시제1호

1. 창원시고시 제12호('91.10.31.)로 지적승인된 창원군 동면 주거지역내 창원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창원군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1992년 1 월 17일

창 원 시 장

가.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 별항

나. 관계도면 : 생략(창원군청에 비치)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결정조서

구 分	등급	유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m)	면적(m ²)	시	점	점 종		비 고
									총	비 고	
신 설	소로	1	1	10	136	1,360	용잠리 416-4	도	용잠리	1167-5	철
" "	"	1	2	10	482	4,820	용잠리 229-4	도	용잠리	407-2	도
" "	"	1	3	10	921	9,210	봉산리 3-4	도	단계리	289-5	도
" "	"	1	4	10	1,287	12,870	송정리 104-6	도	단계리	289-1	도
" "	"	1	5	10	81	810	송정리 97-2	도	송정리	201-13	도
" "	"	1	6	10	226	2,260	송정리 98-9	도	봉산리	9-62	도
" "	"	1	7	10	216	2,160	송정리 160-1	도	봉산리	16-25	대
" "	"	1	8	10	275	2,750	용정리 154-11	전	단계리	683-31	답
" "	"	1	9	10	417	4,170	송정리 182-1	답	용정리	8-22	도
" "	"	1	10	10	288	2,880	송정리 150-22	대	"		
" "	"	1	11	10	15	150	송정리 22-34	도	송정리	20-26	도
" "	"	2	1	8	316	2,528	용잠리 211-5	도	용잠리	1150-2	구
" "	"	2	2	8	323	2,584	용잠리 252	구	용잠리	1150-4	구
" "	"	2	3	8	213	1,704	용잠리 230-12	대	용잠리	250-4	답
" "	"	2	4	8	104	832	용잠리 222-4	도	용잠리	260	학
" "	"	2	5	8	484	3,872	용잠리 356-2	대	용잠리	263-4	대
" "	"	2	6	8	209	1,672	용잠리 219-7	묘	용잠리	278	전
" "	"	2	8	8	315	2,520	송정리 150-8	대	송정리	22-14	답
" "	"	2	9	8	302	2,416	송정리 21-7	답	송리	260-4	구
" "	"	2	10	8	390	3,120	송정리 260-4	구	단계리	292	대
" "	"	2	11	8	231	1,848	용정리 22-13	답	용정리	23-6	답
" "	"	2	12	8	189	1,512	용정리 19-8	답	용정리	19-1	답
" "	"	2	13	8	370	2,960	용정리 20-1	답	용정리	247-2	답
" "	"	2	14	8	118	944	용정리 23-12	답	용정리	9-19	구
" "	"	2	15	8	118	944	용정리 23-6	답	"		
" "	"	2	16	8	93	744	용정리 24-4	답	"		
" "	"	2	17	8	196	1,568	용정리 154-1	대	용정리	8-22	도
" "	"	2	18	8	112	896	단계리 281-1	답	용정리	162-2	구
" "	"	2	19	8	299	2,392	봉산리 4-3	대	봉산리	153	답
" "	"	2	20	8	240	1,920	봉산리 774	도	"		
" "	"	2	21	8	134	1,072	송정리 186-13	대	봉산리	5-2	전
" "	"	2	22	8	170	1,360	봉산리 474	도	봉산리	477	도
" "	"	2	23	8	147	1,176	봉산리 477	도	봉산리	263	답
" "	"	2	24	8	100	800	"		봉산리	15-1	대
" "	"	2	25	8	143	1,144	봉산리 16-67	대	봉산리	16-47	대
" "	"	2	26	8	283	2,264	봉산리 18-2	전	봉산리	9-7	대
" "	"	2	27	8	248	1,984	용정리 144-16	대	송정리	155-15	대
" "	"	2	28	8	121	968	용정리 144-9	전	용정리	149-29	대
" "	"	2	29	8	180	1,440	송정리 151-15	도	송정리	152-25	대
" "	"	2	30	8	212	1,696	봉산리 16-25	대	단계리	697-5	답

규 모							
구 분	등 급	유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m)	면 적(m ²)	시
신 설 소로	2	31	8	229	1,832	단계리 290-2	답 단계리 664-6 답
" "	2	32	8	236	1,888	단계리 283-4	구 단계리 683-1 답
" "	2	33	8	112	896	단계리 676-18	대 단계리 666 답
" "	2	34	8	172	1,376	단계리 683-28	도 단계리 664-2 답
" "	2	35	8	109	872	단계리 676-17	대 단계리 664-4 답
" "	3	1	8	69	414	용잠리 216-12	도 용잠리 396-4 도
" "	3	2	6	306	1,836	용잠리 403-2	대 용잠리 206-4 대
" "	3	3	10	73	438	용잠리 213-8	대 용잠리 1153-24 전
" "	3	4	10	134	804	용잠리 230-13	대 용잠리 249-4 답
" "	3	5	10	88	528	용잠리 234-4	대 용잠리 137-1 칠
" "	3	6	10	159	954	용잠리 132	답 용잠리 130-3 잡
" "	3	7	10	78	468	용잠리 390-18	전 용잠리 273 전
" "	3	8	10	57	342	용잠리 383	답 용잠리 산6-1 임
" "	3	9	10	205	1,230	용잠리 380-1	전 "
" "	3	10	10	82	492	용정리 11-7	답 용정리 11-9 구
" "	3	12	10	52	312	봉산리 9-52	대 봉산리 9-61 대
" "	3	13	10	52	312	봉산리 16-98	대 봉산리 27 답
" "	3	14	10	118	708	용정리 145-4	대 용정리 149 답
" "	3	15	10	71	426	단계리 683-6	전 용정리 145-7 전
" "	3	16	10	131	786	단계리 155-5	대 단계리 238 도
" "	3	17	10	70	420	용정리 223-20	도 용정리 223-27 대
" "	3	18	10	37	222	단계리 664-4	답 단계리 661 전

◎북제주군고시제59호

제주도고시 제2,158호('92. 1.16.)로 세부시설 결정된 김녕 도시계획 김녕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승인된 관계도서 사본을 북제주군청 도시과와

구화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합니다.

1992년 1월 17일

북 제 주 군 수

1. 유원지 세부시설 지적승인 조서 : 별항
2. 관계도면 : 계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세부시설결정조서

구 分	분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부 면 (m ²)	건축면적(m ²)			구 조	비 고
					지	적	면적		
휴 양 시 설	2	토실품 판매점 및 동김녕리 산1-1 휴게소		2,480	448	448	448	철근콘크리트	1층1동
관리및편익시설	1	관리사무소, 샤워탈 동김녕리 488 의장 및 공중화장실	동김녕리 산1-1	3,830	211	211	"	"	"
	6	샤워탈의장		"	1,000	100	100	"	기존시설 1동
	7	공중화장실		"	600	66	66	"	"
운 동 시 설	3	육외수영장		"	782			1087	

◎도로결정조서

구 분	등 급	유 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 ²)	시	점 종	점
신 설 소로	3	1	2	840	1,680	동김녕 1198-1		동김녕 429	
" "	3	2	2	60	120	동김녕 산1-1		동김녕 468	
" "	3	3	2	132	264	소로 3-1		동김녕 방파제	

◎경상남도공고제11호

공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울산·미포국가 공업기지내 공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을 인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992년 1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액체원료 이송관 매설공사
2. 위치: 울산시 남구 선암·부곡동 일원
3. 사업시행면적: 185.9m² (L=1,513m)
4. 준공년월일: 1991년 12월 5일
5. 준공인가사항(확정측량조사 및 지적도 생략)

◎(인천)북구공고제4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

전문건설업면허를 건설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 공고합니다.

1992년 1월 17일

북구청장

1. 면허내역

- 업 종: 상하수도공사업
- 면허번호: 서울 제13-191호
- 상 호: (주)대경엔지니어링
- 대표자: 손병옥
- 영업 소재지: 인천직할시 북구 십정동 182-87
- 2. 면허취소사유: 자진반납
- 3. 면허취소년월일: 1992년 1월 8일

◎양구군공고제92-5호

국토이용계획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군 국토이용 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1월 17일

양구군수

1. 건명: 국토이용계획 변경
 2. 주요내용
- 가. 위치: 양구군 양구읍 하리 139 일대

(면당 단가 7원 80전)

나. 면적: 0.083km²

다. 변경내역: 기존-경지지역
변경-개발촉진지역

라. 변경사유: 농공단지조성

마. 변경도면: 군청 산업과 비치

3. 공고기간

1992년 1월 17일~1992년 2월 7일 (20일간)

4. 의견제출

본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위 공고기간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구군 산업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철원군공고제92-6호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군 용도지역을 요청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1월 17일

철원군수

1. 건명: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2. 주요내용

가. 위치: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3번지 일원

나. 면적: 148,760m²다. 변경용도지역: 경지지역 148,760m²→개발촉진지역(공업용지지구) 148,760m²

라. 변경사유: 경지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함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제고

마. 변경도면: 철원군 건설과에 비치

3. 의견제출: 본 용도지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철원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